

의안
번호

496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9. 04.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496호
- 다. 제출일자 : 2025. 08. 18.
- 라. 회부일자 : 2025. 08. 27.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제6호)
- 나. 선정 대리인 신청시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37조)
- 다.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
- 라.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
- 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선정대리인에 관한 조항 삭제(부칙)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62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7. 10. ~ 2025. 07. 30.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2025.1.1.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¹⁾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6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제5호의 신설(2025.1.1. 시행)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 전·후 >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2020~2024) 성북구에서는 신청 사례가 없었음.

- 안 제10장 신설은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안 제3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 제2호2)에 따른 위임 규정을 반영하여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 안 제3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및 제3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는 신청 절차 및 선정 방식, 의무·우대 기준,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근거 등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 절차를 구체화함.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기존의 기획재정부 세무1과 소관 선정대리인 업무가 감사담당관 소속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제8조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업무 이관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중심의 일원화된 집행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